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-1262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76호(2008.08.14.)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, 성북구고시 제2012-142호(2012.09.20.), 성북구고시 제2016-55호(2016.05.06.) 및 성북구고시 제2016-144호(2016.10.20.)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지정된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 「안암제2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8일

성 북 구 청 장 인**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
주민공람·공고****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**
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공람 · 공고 내용

가. 사업명칭 :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성북구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

다. 시행 면적 : 11,248.7㎡

라. 건축 계획 : 지하4층/지상12층 4개동 공동주택(아파트) 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487.8㎡, 공원 694.8㎡

3. 공람기간 : 2016.12.12.~2016.12.27.(16일)

4. 시 행 자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
- 성 명 :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

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65)

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27-4333)

7. 관계도서 : 안암제2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사업시행인가 공람의견서

사 업 명	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			
공 랑 기 간	2016년 12월 12일 ~ 2016년 12월 27일			
대상물건지	건물 :			
	토지 :			
의견제출인	성 명		(인)	생년월일
	주 소		전 화 번 호	
내 용				

2016. 12.

인 사

《발령 제 241 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윤 경 복	지 방 운 전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행 정 국 행 정 지 원 과 근 무 를 명 함	< 신	규 >
2	권 일 현	지 방 운 전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행 정 국 행 정 지 원 과 근 무 를 명 함	< 신	규 >
3	이 두 엽	지 방 운 전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행 정 국 행 정 지 원 과 근 무 를 명 함	< 신	규 >
4	박 윤 호	지 방 운 전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행 정 국 행 정 지 원 과 근 무 를 명 함	< 신	규 >

2016. 12. 04.자.

